

울산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나126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나12681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5. 4 선고 2019가단12781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우

피고, 피항소인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탁현

변론종결 2022. 7. 21.

판결선고 2022. 9. 1.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5. 4. 선고 2019가단127817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공동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130,17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17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1) B는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있음에도 무자력인 상태에서 피고 C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인 130,17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1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만약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면, B는 소외 회사를 통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소외 회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는 B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2018. 12. 26. 비로소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0.부터 2016. 3. 사이에 체결된 8건의 도급계약은 실제로 소외 회사가 아닌 B와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합의 이전인 위 계약일부터 존재하는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6호증의 2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는 ‘공급받는 자’를 소외 회사로 하여 각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에게 지급된 공사대금 역시 모두 소외 회사 명의로 입금된 점, ② 원고는 B에 대한 고소장에, ‘공사대금에 관한 견적서를 소외 회사에 제출하면 대표이사 B가 검토하고 공사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말이 없으면 견적서대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구두약정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하였고, 실제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점, ③ 이 사건 합의 당시 작성된 이행각서에 ‘피고소인(B)은 고소인(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1억 3,000만 원임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형사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B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의 액수를 확인하고 이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부터 소외 회사와 별개의 인격체인 B에 대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각 공사를 진행할 당시 B가 공사대금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수차례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5호증 및 2022. 8. 8. 제출된 진술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B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갑 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원고와 하도급계약들을 체결할 무렵 채무 누적과 거래처 부도에 따른 채권 부실화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사실, 그 과정에서 B가 2015. 10.경 다른 피해 회사에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회사를 속여 하도급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공사대금 4억 2,40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죄로 2017. 7. 5.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985호), 한편 위 사기 사건의 경우 소외 회사가 이미 건축주로부터 2015. 5.과 같은 해 8.경 1차 기성금 합계 11억 3,6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차후 이를 받으면 피해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행위(지급받은 기성금은 피해 회사가 아닌 다른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에 사용할 의사였다)가 유죄로 인정된 점, 원고는 8건의 하도급공사대금 341,440,000원 중 213,800,000원을 지급받았고, B가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2019. 6. 15.경 B를 재고소한 사건에서 2019. 9. 9. 무혐의결정이 있었으며, B가 원고를 상대로 어떠한 구체적 기망행위를 하였는지도 특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B가 각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주연, 판사 김용희, 판사 이정목

별지